

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 (2019. 9. 1 시행)

제9장 논문지도와 공개발표

제36조(논문지도와 지도학점)

-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하여 피 지도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 한다.
-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박사과정생은 논문지도학점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 공개발표에 통과한 자는 논문지도학점 2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.
- ③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지도 학점을 합격(P) 또는 불합격(NP)으로 평가하고 소정의 논문지도 학점부여 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

제37조(공개발표)

- ① 학위논문심사청구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려는 학기에 논문주제에 관하여 공개발표를 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② 학위논문공개발표신청서는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공개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발표 이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부터 논문예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.
- ④ 공개발표자는 발표예정일 1주일 전까지 완성된 발표문과 그 개요를 5부 이상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8조(공개발표의 심사)

- ① 논문심사자로 예정된 전임교수는 공개발표에 임하여 당해 공개발표자의 논문예비계획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여 발표내용을 심사·논평한다.
- ② 공개발표의 합격여부는 논문심사예정자 전임교원의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논문지도교수는 그 결과를 소정의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.
- ③ 공개발표의 합격은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해서 5개 학기 동안 유효하다. 단 공개발표를 한 연구주제와 다른 주제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.

제39조(대학원생의 참가의무)

박사과정생은 재학기간 중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동료대학원생의 공개발표에 참가하여야 한다.